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자등록대상에 녹색국채 포함 〉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39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9.
3. 회 부 일 : 2026. 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 72조제1항제5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국채등의 대상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채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은 주식, 사채, 국채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통합적으로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 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¹⁾ 2016년에
제정되어 2019년 시행되었음.

○ 현행법에 따르면, 계좌관리기관²⁾(증권사 등)은 권리자별로 전자등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식
-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
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 다. 국채
- 라. 지방채
- 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 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 사. 「신탁법」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受益權)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 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
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
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 하.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
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2. “전자등록”이란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
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 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나. 신탁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록주식등³⁾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등의 사항을 전자등록⁴⁾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해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제22조⁵⁾),

- 이와 같이 고객계좌부 등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함(제35조⁶⁾).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외국 전자등록기관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전자등록계좌부(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전자등록된 주식등

4)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

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권리자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발행인의 명칭

3.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4.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5.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6.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객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그 밖에 고객관리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 한편, 「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에서는 국채 등(국채·재정증권·통화안정증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국채 등의 발행 및 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⁷⁾하면서, 「전자증권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상법」 제34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등록질(登録質)의 경우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성명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전자등록주식등의 신탁은 제32조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전자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선의(善意)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7) 「국채법」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는 원금의 상환, 제13조에 따른 매입·교환,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채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법」에서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 등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⁸⁾을 두어, 국채 등의 발행업무는 한국은행이, 전자등록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각각 수행하는 구조로 국채 등의 전자등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 ~ ⑧ (생략)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① 삭제 <2016. 3. 2.>

② 제2조에 따라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3. 2.>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국채등이 이 법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즉, 현재 국채 등의 경우 한국은행은 국채등록부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권리의 귀속 및 이전 등 권리관계는 전자등록계좌부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음.

[표1] 국채 등의 발행 및 유통체계(한국은행 특례 적용시)

구 분	국채 등 등록 구조	전자등록 구조	
	한국은행 (국채등록부)	한국예탁결제원 (고객관리계좌)	증권사 (고객계좌부)
발행 예) 채권 1조원 발행 →A낙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 등록 (명의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별 총량 기재 (계좌관리기관: A 증권사)	권리자 기재 (권리자: 甲)
유통 예) A가 B에게 채권을 판매		증권사간 총량 조정 (계좌관리기관: B 증권사)	권리자 변경 기재 (권리자: 乙)

[표2] 국채 등의 발행 및 유통체계(한국은행 특례 미비시)

구 분	국채 등 등록 구조	전자등록 구조	
	한국은행 (국채등록부)	한국예탁결제원 (고객관리계좌)	증권사 (고객계좌부)
발행 예) 채권 1조원 발행 →A낙찰	권리자 명의 등록 (권리자: 甲)	증권사별 총량 기재 (계좌관리기관: A 증권사)	권리자 기재 (권리자: 甲)
유통 예) A가 B에게 채권을 판매	권리자 명의 변경 (권리자: 乙) (예결원→한은으로 정보전달 必)	증권사간 총량 조정 (계좌관리기관: B 증권사)	권리자 변경 기재 (권리자: 乙)

- 한편, 최근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⁹⁾이 발의되었음.
-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¹⁰⁾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출연금, 기부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후대응기금 재원이 배출권 매각대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 기존 세입에 의존하여 탄소중립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9) 2026. 1. 9.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40호), 2026년 2월말 현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계류 중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표3]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기금재원	○ 기금재원에 <u>녹색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u> 추가
녹색국채 발행	○ 기금 부담으로 채권 발행 가능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요청 → 재정경제부장관 발행 ○ 발행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 (발행 시 해당 용도 명시) ○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채법」 적용
녹색국채 계정 설치	○ 녹색국채로 조성된 자금에 대해 별도의 녹색채권 계정 설치 및 회계처리 의무화

□ 이에 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의결을 전제로 녹색국채에 대해서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녹색채권이 다른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녹색국채에 대한 명시적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할 경우 한국은행의 등록과 전자등록계좌부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등록체계의 정합성에 관한 해석상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전자등록증권의 권리 귀속 및 이전 등 권리관계가 전자등록계좌부를 중심으로 관리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녹색국채에 대해서도 기존 국채와 동일한 전자등록체계 내에서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실무상 명확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2023년 개인투자용 국채¹¹⁾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채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록업무는 한국은행이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녹색국채의 발행 대상에 따라 한국은행 특례규정 정비의 필요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논의경과를 고려하여 이 법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한국은행이 아닌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야 하는 현행 국채등록 체계상 한국은행에 대한 특례 부여가 녹색국채 발행의 선결조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녹색국채의 발행대상, 범위 등 세부내용에 따라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선행되어 세부내용이 먼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11

11) 「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